새로운 도약, 구민과 함께하는 서구의회

2026. 9. 22.

심사결과보고

의안 번호	의 안 명	심사결과	비고
4618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대전광역시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안 번호	4618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6. 9. 22.

도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6년 8월 27일 신진미·김태민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나. 회 부 일 자: 2026년 8월 27일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심사일자: 제299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상정·심사·의결(2026. 9. 10.)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현행 조례에는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제8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점용료의 반환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 이에 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상위법령과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고 조례의 체계성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김재중)

가.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제8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점용료의 반환 절차·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임.

나. 주요 개정 내용은

- (안 제4조제1항) 「도로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구청장의 점용료 부과·징수 근거를 명확히 하고,
- (안 제4조제2항)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르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다. 상위법령과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고 조례의 체계성을 높이고자 하는 해당 조례안은 검토 결과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답변 요지: 생 략

5.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6. 소 수 의 견: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참고자료 관계법령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도로점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3. 그 밖에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도로점용을 종료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의2제1항에 따른 등기정보자료 및 「건축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④ 점용료의 산정기준,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반환 방법 등 점용료의 징수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제23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61조제4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해당 일반경쟁에 부친 때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시한 금액을 점용료로 부과한다. 다만, 그 점용료는 제4항에 따라 산정된 점용료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제71조(점용료의 부과 · 징수 및 반환)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 ·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점용료 납부 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토지나 건물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 도로관리청은 그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 · 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 · 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 ·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이 대상과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점용료에 대하여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허가기간이 1년 미만으로 남은 경우에는 그 남은 허가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

④ 도로관리청은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 · 징수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⑥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⑦ 도로관리청은 제6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 · 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⑧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외의 도로에 관한 점용료의 반환 절차 · 방법 등 점용료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제6항 및 제7항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